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입주자 모집 공고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대전 청년하우스”라 한다)의 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6.

대전청년하우스 관장

1 공고 개요

시설현황

- 시설명 : 대전청년하우스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103 (도룡동)
- 규모 : 지상 1층 ~ 10층, 연면적 7,043㎡
- 주요시설 : 기숙사 226실 (1실 18.41㎡), 공유라운지 등 공유공간 11개소

공급대상 : 기숙사 226실 (장애인실 2실 포함)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모집구분

모집대상	① 청년근로자 개인	② 중소기업
배정 기숙사실 (226실)	148실 (일반 146실 + 장애인 2실)	78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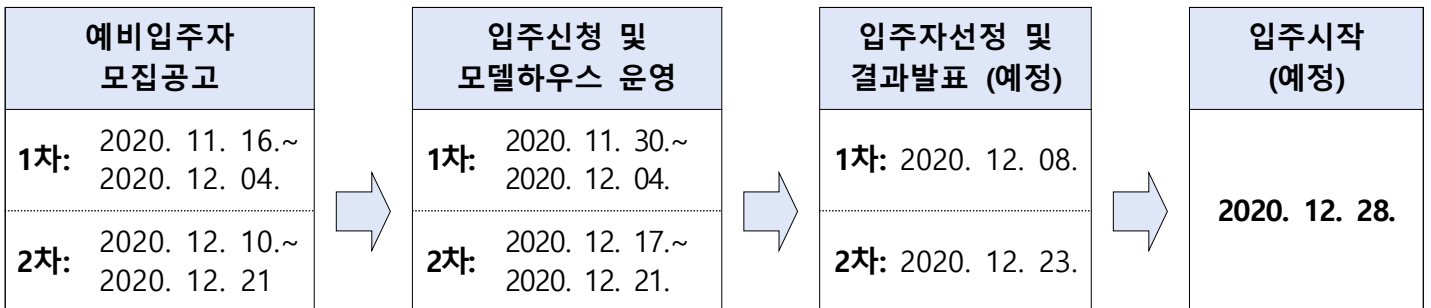
- 장애인실은 선정된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애정도가 높은 순으로 우선 배정(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 ※ 단, 장애정도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이 낮은 신청자 우선 배정
- 중소기업은 신청 기숙사실 수 제한은 없으나, 선정기준(별첨 1)에 따라 배정
- 모집대상별 신청자 수가 배정 기숙사실을 초과할 경우, 미달되는 모집대상 기숙사실로 추가 배정

입주기간 : 2020. 12. 28. ~ 2022. 12. 27. (24개월)

입주조건

입주기간	• 입주기간 2년
입주부담금	• 보증금 : 1,000,000원 / 개인은 입주 시 납부, 기업은 지정기간 내 일괄 납부 • 월 사용료 : 275,000원 / 부가가치세(10%, 25,000원) 포함금액 ※ <u>현재 부가가치세 감면 협의 중</u> • 일반관리비 : 20,000원 / 공공요금(전기 · 가스 · 수도 등) 개별부담
기숙사실 종류	• 창문 형태에 따라 4가지 기숙사실 타입으로 구성 / 별첨 2 * 기숙사실 배정은 입주신청 시 희망유형에 따라 선착순으로 배정 1) 전면창형 2) 발코니형 3) 중간형 4) 작은 창형
배치가구 등	• 침대, 침구류세트, 냉장고, 옷장, 신발장, 시스템에어컨, IP-TV, WIFI

공고절차



※ 1차 모집결과에 따라 2차 모집공고 미 실시 할 수 있음.

※ 선정된 입주자는 2021년 1월까지 입주해야함.

2 시설현황

대전청년하우스 시설현황

건물주소	공급가능세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103 (도룡동)	226세대

※ 전 세대 1인 1실 운영

층별현황

층	주요 시설	비고
1층	기숙사실(18), 관리사무실, 무인택배실, 스낵바, 공유라운지, 무인편의점	
2층	기숙사실(24), 공유주방, 세탁실, 피트니스룸	
3층	기숙사실(24), 미팅룸	
4층	기숙사실(24), GX룸	
5층	기숙사실(24), 릴렉스룸	
6층	기숙사실(24), 스터디라운지A	
7층	기숙사실(24), 릴렉스룸	
8층	기숙사실(24), 스터디라운지B	
9층	기숙사실(24), 릴렉스룸	여성전용층
10층	기숙사실(16), GX룸	여성전용층

※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입주조건 및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기준 (별첨 1 참고)

청년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선정 : 1)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임금이 낮은 순부터 선정 2)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에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청년근로자 • 예비후보자 : 결원 발생 시 추가 선정
중 소 기 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부여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 등이 낮은 순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부여 • 입주기업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모집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입주기업으로 선정 • 예비후보자 : 결원 발생 시 추가 선정 <p>※ 중소기업은 기업별 배정률에 따라 배정한도를 산정하여 기숙사수를 결정함</p>

4

입주지원

- 입주지원서 접수** / 대리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입주자, 대리자 도장 및 신분증 지참)
- 접수방법 : ① **이메일접수** ② **현장접수** ③ **온라인(구글폼을 이용)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 및 업로드 (첨부파일은 이미지파일 제출)

구분	제출서류
청년근로자	1. 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서(개인) / 서식 1 2. 재직증명서 1부 3. 근로계약서 1부 4.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증빙 1부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급여명세서 등) 5.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 (장애인실 희망 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증명서 등) 7. 개인(법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 서식 3 ※ 2, 5, 6 서류는 공고일 이후 서류로 제출
중 소 기 업 ※ 별첨 3 참 고	1. 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서(기업) / 서식 2 2.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사본 1부 4. 청년근로자 고용관련 증빙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소득세 신고자료) 5. 매출관련 증빙 1식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¹⁾) 6. 개인(법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 / 서식 3

※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의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에 선정됨이 확인될 경우, 입주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접수 및 문의처

- 서류접수** : 대전청년하우스
- 주 소** :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97번길 103 (도룡동)
- 문 의** : ☎ 042-863-2030
- 이 메 일** : youthhouse.d@gmail.com
- 구글폼 주소**

청년근로자 개인	https://forms.gle/zQo3Zwn9V88vcsQWA
중소기업	https://forms.gle/o9LH2VTEGEtYt1Nf7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낮은 순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함

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서 (개인)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성 명 <div style="text-align: center;"><input type="checkbox"/> 장애인실 희망 여부</div>	생년월일
	성 별	연 락 처
	사업장 근로기간 ~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준용)	
근 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전청년하우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1부 2. 근로계약서 1부 3.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증빙 1부(급여명세서 등) 4. 4대보험 가입확인서 중 1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 (장애인실 희망 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증명서)	수수료 없 음
------	---	------------

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서 (기업)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 기업	기업명(법인명,기관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법인,기관 소재지)	

신청 내용	입주자격 구분	[] 중기업 [] 소기업 [] 그 밖의 기업		
	소속 청년근로자 수	사용신청 기숙사수		
	주된 업종의 직전 3개년도 매출액	0000년	0000년	0000년
	기업(법인,기관)의 기숙사비 지원여부	[] 전액 [] 일부지원(%) [] 미지원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대전청년하우스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 해당 사본 1부 3. 청년근로자 고용관련 증빙 1부(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소득세 신고자료) 4. 매출관련 증빙 1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수수료 없 음
------	---	------------

개인(법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법인)정보를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대전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과 관리를 위해 개인(법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법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신청 시 신청자격 검토, 우선순위 검토, 선정 후 계약진행, 계약 후 운영 및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등

【수집 또는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법인·기관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근로기간, 평균임금(매출액),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재직 및 근로계약 관련 정보, 4대보험 가입정보, 장애 정보 등

【개인(법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계약 종료 후 2년까지

【개인(법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권리】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하실 경우 입주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계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입주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법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가. 청년근로자 선정기준

구분	기준	확인서류
입주자 선정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평균 임금이 낮은 순부터 선정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예비후보자 관리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는 예비후보자로 관리하고 결원발생 시 추가 선정	

나. 중소기업 선정기준

구분	기준	확인서류
우선순위 부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 등이 낮은 순으로 입주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부여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중소기업별 기숙사수 결정	<p>1. 신청 중소기업별 배정률을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p> $\text{중소기업별 배정률} = \frac{\text{해당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수}}{\text{모집된 모든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수의 합}}$ <p>2. 중소기업별 기숙사 배정한도를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p> $\text{중소기업별 배정한도} = \text{모집정원} \times \text{중소기업별 배정률}$ <p>3. 중소기업별 기숙사수를 아래와 같이 결정</p> <p>① 중소기업의 신청수량이 중소기업의 배정한도보다 많은 경우 중소기업별 기숙사수 → 중소기업의 배정한도로 함</p> <p>② 중소기업의 신청수량이 중소기업의 배정한도보다 적은 경우 → 중소기업의 신청수량으로 함</p>	소득세 신고자료, 4대보험료 납부내역 등
입주기업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모집정원이 채워질 때까지 입주기업으로 선정	
예비후보자 관리	선정되지 못한 신청 중소기업은 예비후보자로 관리하고 결원발생 시 추가 선정	

대전청년하우스 위치도 및 기숙사실 유형

□ 위치도



위 치 도



건물사진

□ 기숙사실 유형

1. 전면창형



2. 발코니형



3. 중간형



4. 작은 창형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 산정을 위한 제출자료

구 분	제출자료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